

노인보건의료의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김현수*

A study on the policy of Senior Citizens' Medical Act

hyeon-su kim*

요약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ealth Medical Act contains the responsibility of Nation about People's Right and Obligation and aim at promoting health and welfare of People. The old age officially means time when Health is weakened. To complete the social security it is on the one hand necessary to provide an elaborate system of coordin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t should be pursued on policy. Medical benefits should be comparatively analys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ion.

키워드 : 노인(the old), 의료법(medical act), 복지(welfare), 노인복지법(Senior Citizens' Welfare Act)

* 경찰행정학부 조교수

노인보건의료의 입법정책

1. 입법정책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하여 유선 무선을 통한 안전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 제27 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로 한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소득·주거·건강·사회적 접촉수준 등이 취약하여 고독사 및 결식 등이 우려되는 요보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안은 ‘노인돌봄서비스’라는 세부사업 명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그 내용이 법문 자체만으로 명확히 정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또는 별도의 정의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홀로 사는 노인

여 방문요양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수준에 따른 기초노령 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일자리 보장 및 건강검진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85.5%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극히 낮은 이유는 노인

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은 정보접근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지가 부족한 데에 기인(起因)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

따라서 국가는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혜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營爲)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27 조의2 제1항)고 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제27 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관리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 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운영 및 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설치·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이 활성화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로당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치료와 요양을 제공해주는 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복지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은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생활지원, 보건교육, 국민영양개선 등 국민건강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³⁾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의료법 제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역보건법 제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

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제의 문제점

1)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제2항).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

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방문 목욕서비스는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노인복지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 기금 등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중장기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급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여 요양보호사가 전국적으로 무더기로 배출되고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난립되어 있으므로 자격미달의 요양보호사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요양보호사 기본적인 자격미달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부실이 요양보호사 질적 수준을 저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무자격 교수 강의, 교육면제 담합, 형식적인 실습교육, 허위 경력증명서 및 실습증명서 발급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고, 2008년 요

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경고 173건, 사업정지 20건, 사업폐지 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공단이 직접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질적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4)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유아교육법」 제6조5)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1항).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재 독거

노인에게도 제한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이미 26.7%를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독거노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상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에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등의 질환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1항).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7조1항). 장기요양보험사업⁶⁾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장기요양보험의 가

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동법 제7조 제3항).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다(동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인 바,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정 심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⁷⁾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공단은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⁸⁾로 판정한다(동법 제15조 제2항).

참고문헌

1)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국회사무처예규 제31호)

1조(목적) 이 기준은 국회의 법률안 입안·접수 및 심사와 의안의 정리에 필요한 용어와 법문표현 등에 관하여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입법 업무의 통일성·체계성·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친화적 입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률안의 입안·접수·심사와 의안의 정리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법률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기본 원칙) ①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②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2) 예를 들어,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정의 조항 등 참조.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제6조 (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지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기능장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 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5) 「유아교육법」
-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
- 7) 즉,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정 심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8) 이하 "수급자"라 한다.